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 〉
■ 김승수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0398호)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안 제22조제4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12.

다.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안 제22조제4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①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안 제22조제4항제2호 신설), ②마약류 정보(안 제22조제4항제3호 신설), ③저작권 침해 정보(안 제22조제4항제4호 신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를 보호하기----- -----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u><신설></u>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정보
<u><신설></u>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방심위의 회의는 법 제22조제3항1)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조 제4항2)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전자 문서 포함)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해당 사유에

- ①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안 제22조제4항제2호 신설),
-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에 따른 마약류 정보(안 제22조제4항제3호 신설),

-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③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안 제22조제4항제4호 신설)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재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2주에 1회 하고 있고, 법 제22조제5항5)에 따라 구성된 4개의 소위원회 중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가 각각 주 1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주 2회 대면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4개의 소위원회 중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의 경우에만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매일 서면의결(전자심의)을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 서면의결 대상이 아님에 따라 차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일응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동일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 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046·2112221)」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마약류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므로 수용 의견임.
-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므로 수용 의견임.
- 다만, 방심위가 현재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면회의를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는 안전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해보면, 방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 사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
